

01 세제

1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 과세특례 신설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☎ 044) 215-4232

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·자영업자 및 농·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를 도입합니다.

- (가입 대상) 근로소득자·사업소득자 및 농어민
 -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- (세제 지원)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 -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근로자·종합소득금액 3,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,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- (의무가입 기간) 5년
 - 청년 (15~29세) 및 총급여 5,000만원이하 근로자·종합소득금액 3,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,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
- (납입 한도) 연 2,000만원* (총 1억원)
 - * 기존 재형저축,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
- (가입 기한) 2018년 12월 31일까지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도입

- 추진배경 근로자·자영업자 및 농·어민의 재산형성 지원
- 주요내용
 - 가입대상 : 근로소득자·사업소득자 및 농·어민
 - 세제지원 :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% 분리과세
 - 의무가입 : 5년 (청년 등 3년)
 - 납입한도 : 연 2,000만원 (총 1억원)
 - 가입기한 : 2018년 12월 31일까지

2.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☎ 044) 215-4211 | 법인세제과 ☎ 044) 215-4221

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(법인 차에 한해 적용) + 운행기록 작성
 -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(800만원) 도입
- 개정내용은 법인·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,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.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도 세법개정안(12개)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
- 주요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*이 연간 1,000만원 이하인 경우
 - *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자동차세, 보험료, 수리비, 통행료 등
 -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(법인차에 한해 적용) ⇒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
 -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,000만원 초과인 경우
 -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(법인차에 한해 적용)시에 1,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⇒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
 -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
 -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,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
- 시 행 일 (법인·성실신고확인대상자)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
(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)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

3.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☎ 044) 215-4131

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(대기업 200만원)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.

- 개정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

-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
- 주요내용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(대기업의 경우 200만원)씩을 세액공제
-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

4.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☎ 044) 215-4233

해외상장주식에 60%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,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·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.
 - 가입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
 - 가입방법 :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
 - ※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
 - 세제혜택 기간 :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
- 납입한도: 1인당 3천만원

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

- 추진배경 민간부문의 해외(증권)투자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

요건	- (대상) 해외상장주식에 60% 이상 투자하는 펀드 - (가입기간) 2016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 - (가입방법)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- (세제혜택 기간) 가입일로부터 10년간
납입한도	1인당 3천만원

5.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☎ 044) 215-4221

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일반기업(중소기업 제외)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%로 설정하되,
-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하였습니다.
 -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

- 추진배경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
- 주요내용
 - 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
 - 일반기업 : 당해 연도 소득의 80%
 - 중소기업 : 당해 연도 소득의 100% (현행유지)
 - ② 한도적용 제외대상(당해 연도 소득의 100%)
 -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
 -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
 -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
- 시행일 2016년 1월 1일

6.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☎ 044) 215-4311

개인과 중소기업(법인)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%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.

-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·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합니다.
-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,
 -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.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

- 추진배경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
- 주요내용
 - ① 개인·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%p 추가 과세를 적용
 - 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,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7.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☎ 044) 215-4312

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, 연로자,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,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.
 -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: 현행 3천만원 → 5천만원
 -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: 현행 연간 500만원 → 연간 1천만원
 -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: 현행 20세 → 19세
 - 연로자의 기준연령 : 현행 60세 → 65세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

- 추진배경 다자녀·연로자, 장애인 가구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
 -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: 현행 3천만원 → 5천만원
 -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: 현행 연간 500만원 → 연간 1천만원
 - ② 기준연령 조정
 -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: 현행 20세 → 19세
 - 연로자의 기준연령 : 현행 60세 → 65세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8.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☎ 044) 215-4312

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.

-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,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: 현행 40% → 80%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

- 추진배경 부모 동거봉양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
 -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: 현행 40% → 80%
 -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9.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☎ 044) 215-4312

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-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-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: 현행 3천만원 → 5천만원
- 6촌 이내 혈족 · 4촌 이내 인척간 : 현행 5백만원 → 1천만원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

- 추진배경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
- 주요내용
 -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
 -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: 현행 3천만원 → 5천만원
 - 6촌 이내 혈족 · 4촌 이내 인척간 : 현행 연간 500만원 → 연간 1천만원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0.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☎ 044) 215-4324

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합니다.

-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,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.
 - 현행 :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
 - 개정 :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*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
- *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,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

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

- 추진배경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*에서 세금**을 즉시 환급
 - * 2015년 6월 현재 10,774개
 - **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
 -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1.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☎ 044) 215-4324

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합니다.

-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합니다.
 - 대상용역 :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*
 - * 쌍꺼풀수술, 코성형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입술, 주름살제거술, 치아성형 등
 - 적용기한 : 2016년 4월 1일 ~ 2017년 3월 31일

또한, 환급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용역공급확인서 허위 또는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.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

- 추진배경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지원
- 주요내용
 - ①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
 - 대상용역 : 미용성형 의료용역
 - 적용기한 : 2016년 4월 1일 ~ 2017년 3월 31일
 - ②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
 -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
 -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,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
- 시 행 일 2016년 4월 1일

12.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☎ 044) 215-4323

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- 대상 : 배출권,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
- 적용기한 : 2016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) 보도자료

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

- 추진배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
 - ②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

13.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

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☎ 044) 215-4421

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.

-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*하였습니다.
*(현행) 국제거래명세서 → (개정)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
-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→ 2년 중 183일 이하 (6개월)로 강화하였습니다
※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(2년 중 183일) 기준과 일치

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됩니다.

-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*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.
* 7년형: (현행) 투자금액기준 70% + 고용기준 20% → (개정) 금액기준 50% + 고용기준 40%
* 5년형: (현행) 투자금액기준 50% + 고용기준 20% → (개정) 금액기준 40% + 고용기준 30%
-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*을 강화하였습니다.
* (현행) 내국인 지분비율 10% 이상 → (개정) 지분비율 5%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) 보도자료 >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

- 추진배경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
- 주요내용 다국적기업 제출 정보 범위 확대, 외투기업의 감면한도 고용비중 확대 등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4.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☎ 044) 215-4134

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·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·비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.

-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
15.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
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☎ 044) 215-4434

고급사진기·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·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됩니다.

- 고급사진기, 녹용, 향수, 가전제품(전기냉장고·전기세탁기 등)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 - 현행 : 고급사진기 50%, 녹용 41%, 향수 27%, 가전제품 25%
 - 개정 : 고급사진기 20%, 녹용 32%, 향수 20%, 가전제품 20%
- 소액물품(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)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습니다.
 - 현행 :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%, 향수 27%
 - 개정 :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%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

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

-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
- 주요내용
 - ① 고급사진기, 녹용, 향수,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
 - 현행 : 고급사진기 50%, 녹용 41%, 향수 27%, 가전제품 25%
 - 개정 : 고급사진기 20%, 녹용 32%, 향수 20%, 가전제품 20%
 -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
 - 현행 :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%, 향수 27%
 - 개정 :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%
- 시행일 2016년 1월 1일

16. 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

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☎ 044) 215-4471

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,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.

-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,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,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,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·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- 또한,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

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> 법령 >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FTA관세특례법 전면개정

- 추진배경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
 -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 재구성(36개 조문 → 46개 조문)
 -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(예: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→ 협정관세 사전신청, 사후신청)
 -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(예: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)
 - ②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
 -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
 -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 지원
 -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·감면 등 근거 마련
 -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
 - ③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·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 명확화
 -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
 -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
 -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
- 시 행 일 2016년 7월 1일

1.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

국세청 소득지원과 ☎ 044) 204-3812, 3817

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단독가구*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-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- *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

(참고) 국세청 홈페이지 > 세목별 정보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신청자격

2016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
- 주요내용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
- 시행일 2016년 1월

2.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

국세청 고객만족센터 ☎ 064) 780-6008

201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,
 -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모바일 상담 신청 방법



홈택스(상담/제보) 접속



상담사례 검색



상담신청